

2025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세입예산

- 2025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24년도 최종예산 대비 72.2% 감액된 25만 2천원임.

〈 2025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세입 예산 편성(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2024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907	907	252	△655	△655	△72.2	△72.2
세외수입	907	907	252	△655	△655	△72.2	△72.2
경상적세외수입	32	32	28	△4	△4	△12.5	△12.5
임시적세외수입	875	875	224	△651	△651	△74.4	△74.4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2024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907	907	252	△655	△655	△72.2	△72.2
세외수입	907	907	252	△655	△655	△72.2	△72.2
경상적세외수입	32	32	28	△4	△4	△12.5	△12.5
이자수입	32	32	28	△4	△4	△12.5	△12.5
임시적세외수입	875	875	224	△651	△651	△74.4	△74.4
보조금반환수입	875	875	224	△651	△651	△74.4	△74.4

2. 세출예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25년 세출예산은 12억 1천 2백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1억 7천 1백만원 대비 3.5% 증액한 수준이며, 2024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11억 4천 1백만원 대비 6.2%가 증액한 수준임.

〈 2025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편성(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2024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1,171,080	1,141,155	1,212,037	40,957	70,882	3.5	6.2	
행정기관리	소 계	1,171,080	1,141,155	40,957	70,882	3.5	6.2	
	행정운영경비	157,187	158,387	187,509	30,322	29,122	19.3	18.4
	재무활동	-	-	-	-	-	-	-
	사업비	1,008,792	977,667	1,024,528	15,736	46,861	1.6	4.8
교 부 금	-	-	-	-	-	-	-	

- 2025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4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4 예산		2025 예산	2024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1,171,080	1,141,155	1,212,037	40,957	70,882	3.5	6.2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544,152	544,152	540,788	△3,364	△3,364	△0.6	△0.6
고충민원 및 청원의 적극적 해결	157,422	157,422	136,931	△20,491	△20,491	△13.0	△13.0
고충민원 조사 처리	43,260	43,260	39,960	△3,300	△3,300	△7.6	△7.6
청원사항 처리	15,275	15,275	13,275	△2,000	△2,000	△13.1	△13.1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23,887	23,887	83,696	59,809	59,809	250.4	250.4
현장민원	75,000	75,000	-	△75,000	△75,000	△100	△100

내지역지킴이 운영								
시민참여 활성화	244,300	244,300	248,589	4,289	4,289	1.8	1.8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34,200	34,200	34,500	300	300	0.9	0.9	
공공사업 감시평가	172,500	172,500	170,700	△1,800	△1,800	△1.0	△1.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37,600	37,600	43,389	5,789	5,789	15.4	15.4	
위원회 직무역량 및 위상 강화	142,430	142,430	155,268	12,838	12,838	9.0	9.0	
위원회 직무 역량 강화 및 홍보확대	121,446	121,446	137,718	16,272	16,272	13.4	13.4	
국제 옴부즈만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20,984	20,984	17,550	△3,434	△3,434	△16.4	△16.4	
행정운영경비(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125,148	126,348	187,509	62,361	61,161	49.8	48.4	
기본경비	125,148	126,348	187,509	62,361	61,161	49.8	48.4	
기본경비	125,148	126,348	187,509	62,361	61,161	49.8	48.4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	464,640	433,515	483,740	19,100	50,225	4.1	11.6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464,640	433,515	483,740	19,100	50,225	4.1	11.6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61,940	61,940	27,100	△34,840	△34,840	△56.2	△56.2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운영	29,940	29,940	29,940	-	-	-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62,460	62,460	112,600	50,140	50,140	80.3	80.3	
인권정책 홍보 강화	6,000	6,000	19,900	13,900	13,900	231.7	231.7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97,200	97,200	97,200	-	-	-	-	
인권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47,800	47,800	44,200	△3,600	△3,600	△7.5	△7.5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113,100	113,100	136,200	23,100	23,100	20.4	20.4	
인권지킴이단 운영	5,000	5,000	5,000	-	-	-	-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41,200	10,075	11,600	△29,600	1,525	△71.8	15.1	
행정운영경비(인권담당관)	37,140	37,140	-	△37,140	△37,140	△100	△100	
기본경비	37,140	37,140	-	△37,140	△37,140	△100	△100	
기본경비	37,140	37,140	-	△37,140	△37,140	△100	△100	

II.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 2025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24년도 최종 예산 대비 72.2% 감액한 25만 2천원 규모임.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교부로 발생한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2024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907	907	252	△655	△655	△72.2	△72.2
세외수입	907	907	252	△655	△655	△72.2	△72.2
경상적세외수입	32	32	28	△4	△4	△12.5	△12.5
이자수입	32	32	28	△4	△4	△12.5	△12.5
임시적세외수입	875	875	224	△651	△651	△74.4	△74.4
보조금반환수입	875	875	224	△651	△651	△74.4	△74.4

가) 경상적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은 인권담당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서 교부한 보조금으로 인해 지원단체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반납 수입인 ‘기타 이자수입’으로 전년(3만2천원) 대비 12.5% 감액한 2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1.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기타이자수입) : 28천원

□ 2025년 세입추계 ----- 28천원

- 최근 3년('22~'24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보조금에 대한 이자 평균 = (36,410원 + 28,180원 + 20,190원) / 3 = 28천원

- 다만, ‘기타이자수입’은 매년 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위원회는 정밀한 세입추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기타이자수입’ 〉

(단위 : 천원)

2022		2023		2024			2025 예산안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10월 말 기준)	결산전망	
45	64	60	50	32	20	20	28

-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 위원회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세입발생 사안별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의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임시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인권담당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서 교부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전년(87만5천원) 대비 74.4% 감액된 22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1.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224천원

□ 2025년 세입추계 ----- 224천원

- 최근 3년(’22~’24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보조금 반환율 평균 적용 = 112,000천원(’24년 시비보조금) × 0.2%(3개년 평균) = 224천원

- 다만,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매년 예산 편성과 결산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보조금 교부 당시부터 정확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불필요한 반환금 발생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또한 교부한 보조금의 정확한 정산과 함께 매년 세입처리 규모 등을 감안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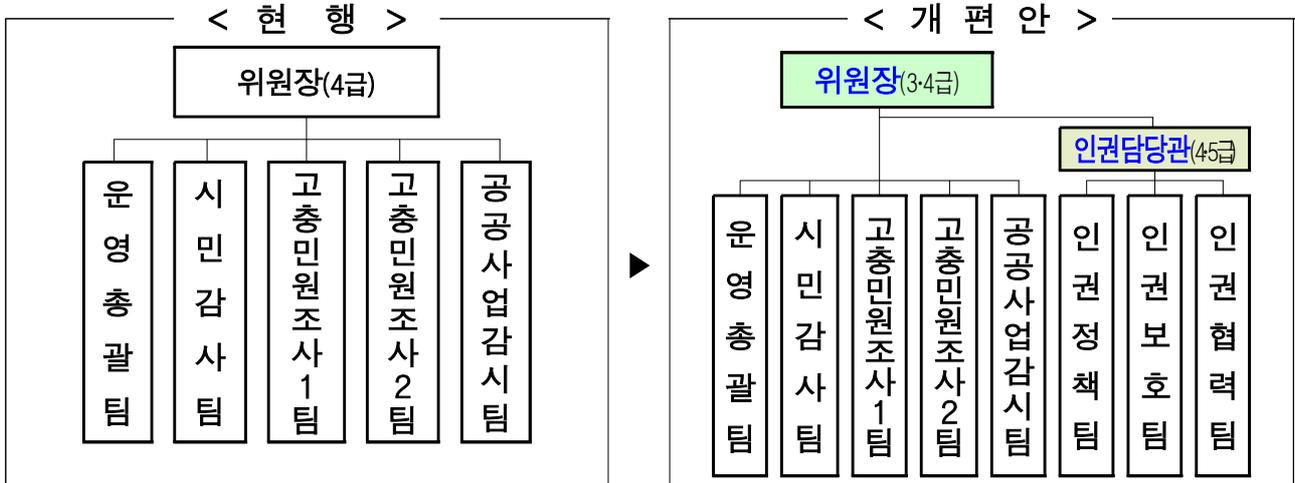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예산안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10월 말 기준)	결산전망	
3,880	11,658	6,857	970	875	0	0	224

2. 세출예산 검토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25년 세출예산은 12억 1천 2백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11억7천1백만원) 대비 3.5% 증액된 수준이며, 2024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11억4천1백만원) 대비 6.2%가 증액된 수준임.

※ 지난 7월 1일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인권담당관이 감사위원회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직책이 개방형 4급에서 복수직 3.4급으로 승격되었고, 인권담당관 직급은 4급에서 4.5급 복수직급으로 하향되었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직개편안 >



※ 서울특별시 조직개편안, 2024년 7월 1일 시행.

가) 20% 증감액 사업 현황

○ 위원회 소관 20% 이상 증액 사업은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8천4백만원, 250.4% 증액)”,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1억1천3백만원, 80.3% 증액)”, “인권정책 홍보 강화(2천만원, 231.7% 증액)”,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1억3천6백만원, 20.4% 증액)” 등 4개 사업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산출기초에 따른 증액인지 여부와 사업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5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증액사업 현황(20% 이상) : 4개 사업 〉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별 설명서)	사업명	2024년도	2025년도	증감		증액사유
				증 감	비율(%)	
3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23,887	83,696	59,809	250.4	·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사업을 이관편성
11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62,460	112,600	50,140	80.3	· 인권강사 양성 과정 운영
12	인권정책 홍보 강화	6,000	19,900	13,900	231.7	·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발간
15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113,100	136,200	23,100	20.4	·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 위원회 소관 20% 이상 감액 사업은 “현장민원 내지역 지킴이 운영(7천5백만원, 100%감액)”,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2천7백만원, 56.3% 감액)”, “인권영향 제도 운영(1천2백만원, 71.8% 감액)”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 감액이 사업 효과성에 영향은 없는지,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목적인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5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액사업 현황(20% 이상) : 3개 사업 〉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별 설명서)	사업명	2024년도	2025년도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75,000	-	△75,000	△100	· 2025년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사업으로 이관편성
9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61,940	27,100	△34,840	△56.25	· 위원회 운영비(포럼행사 비용절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위원회 한도액 배분 따라 전액 삭감), 특정업무 경비(타 사업으로 이관 편성)
17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41,200	11,600	△29,600	△71.84	· 용역에서 자문단 운영을 통한 직접수행으로 사업 추진 방식 변경에 따른 감액

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수당

- 위원회는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감사·조사·감시 활동에 있어 신뢰도 제고 및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해 전년(3천3백만원) 대비 13.4% 감액한 2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법률자문단 운영 개요 〉

가. 설치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8조 (시민의 감사 등 참여) 위원회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조사·감시활동을 함에 있어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옴부즈만 이외에 시민사회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나. 자격 및 임기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및 기타 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임기 2년(연임 가능)

다. 역할

- 위원회의 감사·고충민원조사·공공사업감시 관련 분야별 법률 자문
- 감사·고충민원조사·공공사업감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

라. 위촉현황

- 42명('24년 9월말 현재) ※ 최대 50명 가능
 - 변호사 32명, 법학교수 8명, 법학박사 2명

마. 운영 실적

- 총 262건('22년 7월 발족 ~ '24년 9월말)
 - 위원별 전문분야를 고려하되 특정 위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

연 도	자문건수	자문 구분		
		시민·주민·직권 감사	고충민원조사	공공감시
계	262건	39	219	4
2024년	98건	19	79	-
2023년	127건	16	111	-
2022년	37건	4	29	4

○ 법률자문료 지급

- 법률자문료 1건당 200천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지급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7조(수당 등 지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수당),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26조(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

※ 2024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138-139면 재인용.

-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위원회 사업별로 ‘법률자문단 수당(사무관리비)’ 예산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고충민원 조사 등 외부전문가 법률자문수당’을 제외하고, 민원배심제, 청원, 공공사업 감시 법률자문수당은 전액 불용 처리하였고, 2024년 10월까지 민원배심제, 공공사업 감시 법률자문수당은 집행액이 전혀 없어 전액 불용 처리할 예정인바, 2025년 예산에서 민원배심제와 청원의 법률자문수당 편성규모가 적정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2023년 ~ 2024년 10월까지 ‘법률자문단 수당’ 예산 및 집행현황 〉

(단위: 천원, %, '24. 10월말 기준)

구분	세부사업(통계목)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4	고충민원 조사 처리 (사무관리비)	고충민원 조사 등 외부전문가 법률수당 등	22,200	22,200	0	0
		민원배심제 운영 중 법률자문 수당	1,200	0	1,200	100.0
	청원사항 처리 (사무관리비)	청원사항 조사 등 외부전문가 법률자문 수당	400	0	400	100.0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무관리비)	법률자문단 자문회의 참석수당	6,000	6,000	0	0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무관리비)	공공사업 감시평가 외부전문가 법률자문수당	3,000	0	3,000	100.0
2023	고충민원 조사 처리 (사무관리비)	고충민원 조사 등 외부전문가 법률수당 등	22,200	22,000	0	0
		민원배심제 운영 중 법률자문 수당	6,500	0	6,500	100.0
	청원사항 처리 (사무관리비)	청원사항 조사 등 외부전문가 법률자문 수당	3,000	0	3,000	100.0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무관리비)	법률자문단 자문회의 참석수당	-	-	-	-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무관리비)	공공사업 감시평가 외부전문가 법률자문수당	3,000	0	3,000	100.0

〈 2025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수당’ 예산 편성현황 〉

사업명 (산출기초)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고충민원 조사 처리 (사무관리비)	○ 고충민원 조사 등 외부전문가 법률수당 등 지급 = 22,200천원 - 법률자문료 200,000원*3명*37회 = 22,200천원 - 민원배심제 운영 중 법률자문 수당 200,000원*3명*2회 =1,200천원	○ 고충민원 조사 등 외부전문가 법률수당 등 지급 = 22,200천원 - 법률자문료 200,000원*3명*37회 = 22,200천원
청원사항 처리 (사무관리비)	○ 청원사항 조사 등 외부전문가 법률자문 = 400천원 - 법률자문 수당 등 200,000원*2명*1회 = 400천원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무관리비)	- 법률자문단 자문회의 참석수당 200,000원*50명*2회*30% =6,000천원	- 법률자문단 자문회의 참석수당 200,000원*50명*2회*25% =5,000천원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무관리비)	○ 공공사업 감시평가 외부전문가 법률자문수당 200,000원*3명*5회 = 3,000천원	○ 공공사업 감시평가 외부전문가 법률자문수당 200,000원*3명*2회 = 1,200천원

〈 최근 3년간 ‘법률자문단’ 법률자문 현황 〉

(단위: 건)

연도	총계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고충민원	공공사업감시	민원배심	청원
계	262	39	219	4	-	-
2024	98	19	79	-	-	-
2023	127	16	111	-	-	-
2022	37	4	29	4	-	-

※ 2024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143면 재인용.

-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법률자문단은 42명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2024년 9월까지 총 98건의 법률자문 중 1번이라도 법률자문을 하고, 수당을 받은 법률자문단은 28명이고, 자문건수가 5건 이상인 법률자문단은 10명이며, 2023년에는 총 127건의 법률자문 중 36.2%가 6명에게 편중되어 법률자문단 중에서도 특정인에게 자문이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위원회는 최근 민원 및 감사청구 내용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하여 법률적 판단이 필요함에 따라 법률자문단을 확대하여 운영('22년 7월 35명 → '23년 9월 46명으로 확대, '24년 9월 현재 42명)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편중되게 운영되고 있는바, 위원별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 2023년 ~ 2024년 9월까지 법률자문단 수당지급 현황 〉

2024년 9월까지				2023년			
연번	이름	자문건수	지급액(원)	연번	이름	자문건수	지급액(원)
1	강○민	5	1,000,000	1	강○민	2	400,000
2	강○규	1	200,000	2	강○규	3	600,000
3	곽○민	1	200,000	3	곽○민	1	200,000
4	김○완	5	1,000,000	4	김○완	11	2,200,000
5	김○호	1	200,000	5	김○호	2	400,000
6	김○혁	3	600,000	6	김○래	4	800,000
7	김○만	9	1,800,000	7	김○기	3	600,000
8	김○기	2	400,000	8	김○영	8	1,600,000
9	김○영	10	2,000,000	9	김○윤	14	2,800,000
10	김○윤	7	1,400,000	10	김○성	1	200,000
11	김○성	1	200,000	11	문○현	1	200,000
12	배○연	1	200,000	12	박○규	2	400,000
13	신○양	4	800,000	13	신○양	3	600,000
14	신○복	2	400,000	14	신○복	3	600,000
15	오○용	2	400,000	15	오○용	2	400,000
16	오○원	2	400,000	16	오○원	5	1,000,000
17	유○빈	5	1,000,000	17	유○빈	4	800,000
18	이○건	1	200,000	18	윤○해	1	200,000
19	이○주	6	1,200,000	19	이○익	1	200,000
20	이○연	5	1,000,000	20	이○건	2	400,000
21	이○수	2	400,000	21	이○운	1	200,000
22	임○권	1	200,000	22	이○주	6	1,200,000
23	장○경	7	1,400,000	23	이○연	1	200,000
24	장○별	4	800,000	24	이○수	5	1,000,000
25	조○욱	1	200,000	25	임○권	1	200,000
26	최○호	7	1,400,000	26	장○경	14	2,800,000
27	최○호	1	200,000	27	장○별	7	1,400,000
28	홍○열	2	400,000	28	정○정	1	200,000
				29	조○성	1	200,000
				30	조○욱	5	1,000,000

2024년 9월까지				2023년			
연번	이름	자문건수	지급액(원)	연번	이름	자문건수	지급액(원)
				31	최○호	7	1,400,000
				32	태○우	1	200,000
				33	한○웅	3	600,000
				34	홍○열	1	200,000
계		98	19,600,000	계		127	25,400,000

※ 2024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144-152면 참조.

다) 고충민원 조사 처리

- 동 사업은 고충민원을 법률자문 또는 민원배심제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4천 3백만원) 대비 8.0% 감액된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민원배심제 운영횟수 감소(4회 → 2회)와 민원배심제 법률자문 미실시에 따른 감액임.

〈 “고충민원 조사 처리”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43,260	43,260	39,960	△3,300	△8.0
사무관리비	29,860	29,860	25,960	△3,900	△13.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400	13,400	14,000	600	4.5

- “민원배심제”는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민원인과 관련기관 간 주장·반박 및 질의·답변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 판단을 하는 제도임.

- 최근 3년간 민원배심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접수 및 개최 안건은 2021년은 1건, 2022년 2건, 2023년 접수는 4건, 개최는 2건, 2024년 10월말까지 접수 1건에 개최는 없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2024년에는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할 예정으로 민원배심제 운영횟수(4회 → 2회) 조정에 따른 감액은 적절하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민원배심제 접수 및 처리 현황 〉

(단위: 건, '24. 10월말 기준)

연도별 구분	접수 안건*	개최 안건 (회의 횟수)	처리 결과			이행 현황			
			소계	권고, 의견표명	기각	소계	이행	추진중	미이행
2024. 10월	1	-	-	-	-	-	-	-	-
2023	4	2(2)	6	6	-	6	6	-	-
2022	2	2(4)	2	2	-	2	-	2	-
2021	1	1(1)	1	(1)**	1	-	-	-	-

** 기각결정과 별도로 향후 유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 시민감사옹무부즈만위원회, 2024년 11월 8일 별도제출자료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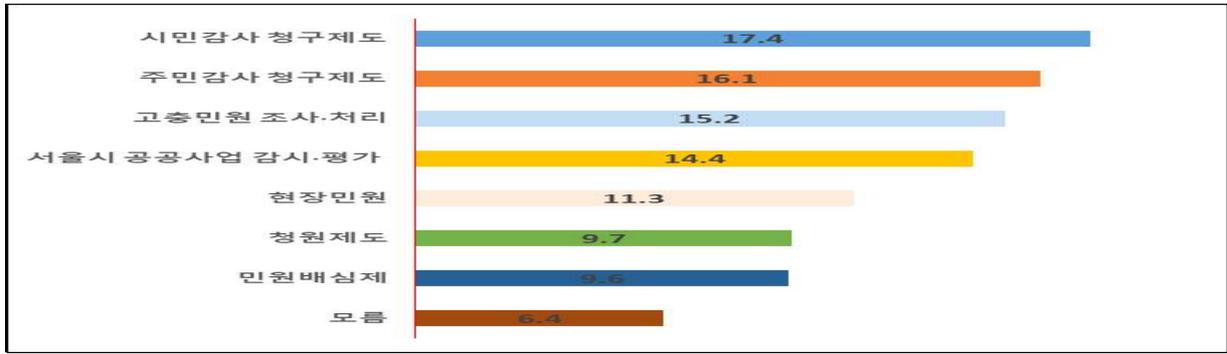
〈 최근 3년간 '민원배심제 운영' 예산 및 집행현황 〉

(단위: 천원, %, '24. 10월말 기준)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2년	고충민원 조사처리	민원배심제 운영	6,900	5,317	1,583	22.9
2023년	고충민원 조사처리	민원배심제 운영	6,500	3,000	3,500	53.8
2024년 10월	고충민원 조사처리	민원배심제 운영	6,700	0	6,700	100.0
2025년 편성예산	고충민원 조사처리	민원배심제 운영	2,800	-	-	-

- 또한, 2023년 위원회의 시민 인지도 여론조사 결과 중, 위원회 사업별 인지도를 보면, 시민감사 청구제도가 제일 높고(17.4%), 민원배심제가 제일 낮은바(9.6%), 위원회는 민원배심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3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업별 인지도 조사 결과 〉



※ 2024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91면 재인용.

라)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 동 사업은 현장민원 평가 및 포상 실시를 통해 현장민원 시민 신고활동 및 신고한 처리 등 현장민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2천 4백만원) 대비 250.4% 증액한 8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이는 2024년 예산안에서 “현장민원 내지역 지킴이 운영” 사업을 일부 감액(7천5백만원 → 6천만원) 후 본 사업으로 이관 편성하여 증액한 것임.

〈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23,887	23,887	83,696	59,809	250.4
사무관리비	17,887	17,887	17,696	△191	△1.1
포상금	6,000	6,000	6,000	0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0	60,000	60,000	100.0

- “내 지역 지킴이”는 자치구별 동네의 불편 유발 지역과 취약 요소를 잘 알고 있는 주민으로 구성된 생활불편사항 신고 요원으로,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내 지역 지킴이” 점검·신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관련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5조(현장민원 신고활동 지원) 위원회는 자치구 현장민원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에서 관할 구역 시민 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점검·신고하는 주민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 지역 지킴이(시민 불편살피미)’ 점검·신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관련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현장민원 점검·평가 등) ① 위원회는 현장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이행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공무원 및 우수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 “내 지역 지킴이”의 주요 활동은 지역의 현장민원을 신고하는 것으로, 주로 야외에서 휴대전화로 신고하여 보조배터리, 다기능 손전등, 방한용품 등의 물품을 가지고 다니며, 이를 보관할 활동 가방이 필요함에 따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내 지역 지킴이’ 활동물품(활동가방) 지원 하기 위해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내 지역 지킴이’ 운영비 지원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내지역지킴이’ 운영비 지원 = 60,000천원
		- 활동물품(활동가방 등) 10,000원*4,000명 = 40,000천원
		- 홍보물 등 인쇄비 5,000원*4,000명 = 20,000천원
	증감사유	
	○ 2024년 ‘현장민원 내지역지킴이 운영’ 사업으로 편성(75,000천원)되었으나 2025년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사업으로 이관편성 및 내지역지킴이(전체 5,769명) 중 주요 활동 인원(4,000명)만 반영하여 감액(△15,000천원)	

- 다만, “내 지역 지킴이” 활동에 있어서 활동가방이 꼭 필요한 물품인지, 굳이 모두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등 그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좀 더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내 지역 지킴이” 운영비 지원은 자치구 예산(5:5)과 매칭하여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2024년에는 도봉구, 서대문구, 송파구는 구비 추경편성 곤란으로 결국 시비를 교부하지 못해 결국 불용 처리할 예정인바, 자치구의 조기 예산 편성을 독려하는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4년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구 교부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총 사업예산 (시비+구비)	사업예산 (시비보조금)	교부 자치구	교부액	교부 시기	비고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840	2,920	종로구	2,920	2024. 4. 1.	
	7,500	3,750	중구	3,380	2024. 8. 28.	
	5,160	2,580	용산구	2,580	2024. 8. 5.	
	6,620	3,310	성동구	1,640	2024. 10. 18.	
	4,460	2,230	광진구	1,200	2024. 6. 19.	
	4,160	2,080	동대문구	2,080	2024. 6. 19.	
	5,000	2,500	중랑구	2,500	2024. 4. 1.	
	6,100	3,050	성북구	3,050	2024. 10. 18.	
	4,280	2,140	강북구	2,140	2024. 6. 19.	
	4,560	2,280	도봉구	-	-	구비 추경편성 곤란으로 시비 교부 지연
	9,240	4,620	노원구	1,740	2024. 10. 18.	
	4,880	2,440	은평구	2,440	2024. 6. 19.	
	6,160	3,080	서대문구	-	-	구비 추경편성 곤란으로 시비 교부 지연
	4,760	2,380	마포구	2,380	2024. 4. 1.	
	5,420	2,710	양천구	2,710	2024. 8. 5.	
	5,960	2,980	강서구	2,980	2024. 6. 19.	
	5,420	2,710	구로구	2,710	2024. 4. 1.	
	3,480	1,740	금천구	1,740	2024. 9. 26.	
	5,400	2,700	영등포구	1,756	2024. 8. 5.	
	4,640	2,320	동작구	2,320	2024. 10. 18.	
	6,260	3,130	관악구	1,040	2024. 6. 19.	
5,400	2,700	서초구	2,700	2024. 10. 18.		
15,600	7,800	강남구	7,481	2024. 10. 18.		
8,040	4,020	송파구	-	-	구비 추경편성 곤란으로 시비 교부 지연	
5,660	2,830	강동구	2,830	2024. 10. 18.		
계	150,000	75,000		56,317		

- 마지막으로, “내 지역 지킴이”의 25개 자치구 활동 인원이 적은 자치구는 111명(금천구), 많은 자치구는 364명(강서구)으로 자치구별로 200명 내외의 “내 지역 지킴이”가 활동하고 있으나,
 - 최근 3년간 자치구별 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활동 실적이 작은 자치구는 종로구(132건)를 포함해 동대문(847건), 서대문(1,362건), 마포(736건), 양천(168건), 금천(590건) 등이며, 활동 실적이 많은 자치구는 강남(23,569건), 관악(14,874건), 노원(12,039건) 등으로 자치구별로 실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자치구별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인원 및 활동 실적 편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4년 자치구별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인원 현황 〉

○ 활동인원 : 25개 자치구 5,769명

(단위: 명, '24. 10월말 기준)

자치구명	인원								
종로구	211	동대문구	203	노원구	266	강서구	364	관악구	333
중구	235	중랑구	219	은평구	212	구로구	245	서초구	235
용산구	244	성북구	288	서대문구	196	금천구	111	강남구	234
성동구	254	강북구	163	마포구	228	영등포구	184	송파구	268
광진구	190	도봉구	159	양천구	246	동작구	233	강동구	248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24년 11월 8일 별도제출자료 재인용.

〈 최근 3년간 자치구별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실적 〉

(단위: 건, '24. 10월말 기준)

자치구명	2022	2023	2024. 10월
계	24,818	175,694	131,426
종로구	-	111	132
중구	-	1,087	4,521
용산구	701	4,330	6,606
성동구	112	1,122	2,014
광진구	-	20,241	9,885
동대문	79	284	847
중랑구	33	2,403	5,245
성북구	2,152	3,837	3,568

강북구	4,560	2,418	1,894
도봉구	1,356	9,370	7,452
노원구	192	14,072	12,039
은평구	1,217	3,841	3,538
서대문	1,016	2,225	1,362
마포구	-	600	736
양천구	28	232	168
강서구	1,516	3,412	9,207
구로구	1,828	5,070	2,569
금천구	209	1,569	590
영등포	2,832	1,921	1,680
동작구	-	133	5,644
관악구	2,348	29,145	14,874
서초구	675	1,586	3,209
강남구	-	55,727	23,569
송파구	97	2,737	3,205
강동구	3,867	8,221	6,872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24년 11월 8일 별도제출자료 재인용.

마)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 동 사업은 위원회 소속 옴부즈만 및 조사관의 직무 역량 강화와 홍보를 통한 위원회 위상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전년(1억2천1백만원) 대비 13% 증액된 1억 3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21,446	121,446	137,718	16,272	13.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886	7,886	16,268	8,382	106.3
사무관리비	82,600	82,600	46,090	△36,510	△44.2
특정업무경비	30,960	30,960	45,360	14,400	47.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0	0	30,000	30,000	100.0

- 다만, 위원회의 중점추진과제를 보면, 고충민원·청원의 적극 처리로 실질적 시민 권익보호 강화, 시민·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약자 보호 정책 기반을 강화하여 시민 권리구제 및 인권 감수성 향상, 시민에게 필요한 위원회 운영으로 시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관임에도,
 - 2023년 위원회 시민 인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위원회 운영 인지도는 2022년 66.8%에서 2023년 64.7% 하락하였고, 위원회 이용 만족도는 2022년 93.5%에서 2023년 90.8%로 하락하였음.

〈 최근 3회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비교 〉

설문조사 항목	2023.11.	2022.10.	2020.12.
위원회 운영 인지도	64.7%	66.8%	86.3%
위원회 인지 경로(1순위)	시 누리집 (35.3%)	시 누리집 (60.6%)	시 누리집 (49.2%)
위원회 이용 만족도 (업무처리 결과: 보통 이상)	90.8%	93.5%	91.9%
설문 대상	일반시민 (207명)	일반시민 (274명)	서울시 온라인 패널 (2,894명)

※ 2024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90면 재인용.

- 위원회는 고충민원, 시민·주민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기관임에도 절반 정도의 시민들이 모른다(2023년 인지도 64.7%)는 결과는 위원회 홍보 부족이나 홍보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는바, 효과적인 홍보 계획 수립을 통하여 인지도 향상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이에 ‘시민접점매체 활용 대시민 홍보(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전년(2천8백만원) 대비 7.1%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대시민 홍보 강화 광고비(사무관리비)’는 전년(4천2백만원) 대비 29.6% 감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위원회 홍보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중 ‘홍보비’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위원회 홍보 확대 = 52,600천원	○ 위원회 홍보 확대 = 40,100천원
	- 대시민 홍보 강화 광고비(리플릿, 포스터 및 기념품 등) 42,200,000원 = 42,200천원	- 대시민 홍보 강화 광고비(리플릿, 포스터 및 기념품 등) 29,700,000원 = 29,700천원
	- 연차보고서 제작 10,400,000원 = 10,400천원	- 연차보고서 제작 10,400,000원 = 10,400천원
		○ 자치구 옴부즈만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3,990,000원*1회 = 3,990천원
	증감사유	
○ 시 및 자치구 옴부즈만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신규 추진에 따른 증액(3,990천원), 시 홍보 채널 활용 확대에 따른 홍보비 감액(△12,500천원)으로 총 사업비 감액(△8,510천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시민접점매체 활용 대시민 홍보 28,000,000원 = 28,000천원	○ 시민접점매체 활용 대시민 홍보 30,000,000원 = 30,000천원
	증감사유	
	○ 대시민 홍보 확대에 따른 증액(2,000천원)	

○ 다음으로, 2025년부터 ‘자치구 옴부즈만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사무관리비)’을 위하여 4백만원(순증)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위원회는 워크숍 개최를 통해 자치구 고충민원, 집단민원 등의 처리를 위한 옴부즈만의 직무역량 강화 및 교류를 통한 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23개 자치구 옴부즈만 현원은 105명('24. 8월말 기준)으로, 워크숍 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옴부즈만 현황 〉

(단위: 명, '24. 8월말 기준)

연번	기관명	옴부즈만(정원)	옴부즈만(현원)	근무형태	부서
1	종로구	7	4	비상근	감사담당관
2	중구	5	3	비상근	감사담당관
3	용산구	5	3	상근	감사담당관

연번	기관명	옴부즈만(정원)	옴부즈만(현원)	근무형태	부서
4	성동구	7	7	비상근	감사담당관
5	광진구	5	5	상근+비상근	감사담당관
6	동대문구	3	3	비상근	감사담당관
7	종로구	7	5	비상근	감사담당관
8	성북구	3	3	상근	감사담당관실
9	강북구	5	5	비상근	감사담당관
10	도봉구	5	4	상근	감사담당관
11	노원구	7	2	상근	감사담당관
12	은평구	3	3	비상근	감사청렴담당관
13	서대문구	5	3	비상근	감사담당관
14	마포구	3	3	비상근	감사담당관
15	양천구	3	3	상근	감사담당관
16	강서구	3	3	비상근	감사담당관
17	구로구	3	3	상근	감사실
18	금천구	7	7	비상근	민원감사담당관
19	동작구	5	5	상근	감사담당관
20	관악구	3	3	비상근	감사담당관
21	서초구	5	3	상근	감사담당관
22	강동구	5	5	상근	감사담당관
23	강남구	20	20	당연+비상근	감사담당관

※ 영등포구, 송파구는 미운영.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24년 11월 8일 별도제출자료 재인용.

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 동 사업은 분야별 인권 전문가로 인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끼치는 법규·정책 등의 심의·자문으로 인권친화적인 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6천2백만원) 대비 56.2% 감액한 2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61,940	61,940	27,100	△34,840	△56.2
사무관리비	30,500	30,500	27,100	△3,400	△11.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12,000	0	△12,000	△100.0
특정업무경비	19,440	19,440	0	△19,440	△100.0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위원회 회의 운영 = 23,400천원	○ 위원회 회의 운영 = 23,600천원
	- 참석수당 200,000원*13명*6회 = 15,600천원	- 정기회 참석수당 200,000원*12명*4회 = 9,600천원
	- 안건검토수당 100,000원*1명*6회 = 600천원	- 소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4명*8회 = 6,400천원
	- 위원회 운영비(속기료, 인쇄비 등) 1,200,000원*6회 = 7,200천원	- 안건검토수당 100,000원*4회 = 400천원
○ 인권위원회 포럼 7,100,000원 = 7,100천원	- 위원회 운영비(속기료, 인쇄비 등) 600,000원*12회 = 7,200천원	
		○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제작 3,500,000*1회 = 3,500천원
	증감사유	
	○ 증액 : 3,900천원 -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따른 증액 400천원 -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3년에 1회) 제작에 따른 증액 3,500천원 ○ 감액 : 7,300천원 - 정기회 연4회 개최에 따라 안건검토 수당 조정 △200천원 - 인권위원회 포럼 행사 비용 절감 △7,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원*12월 = 12,000천원	
	증감사유	
	○ 2024. 7. 1.호 조직개편에 따른 감액 편성(△12,000천원)	
특정업무경비	○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 19,440천원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 4급 100,000원*1명*12월 = 1,200천원	
	- 5급 이하 80,000원*19명*12월 = 18,240천원	
	증감사유	
	○ 2024. 7. 1.호 조직개편에 따라 인권담당관 부서 정원 16명 15,600천원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로 이관 편성	

- 인권위원회 위원은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p>「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p>2의2. 삭제 <2021.9.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p>③ 인권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15조(구성)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당연직으로 한다) <p>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기 인권위원회 임기('19.3.20. ~ '22.3.19.)이후 제4기 인권위원회 구성은 2022년 11월에 1차로 10명의 위원을 구성하였고, 2차로 2023년 2월에 정원 15명을 구성 완료하였음.

- 다만, 인권위원회 설치목적은 인권 전문가가 시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 자치법규, 정책 등의 개선 권고를 통해 인권친화적인 행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권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인권위원회 위원 80%를 법조인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시각 부족으로 활동이 줄었다고 지적하며, 인권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효과적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인권전문가들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4기 인권위원회 구성 현황 >

기수	구성인원	성명	성별	주요이력	위원 임기
4기	1	배OO	남	배보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2.11.1.~'25.10.31.
	2	오OO	남	법무법인(유한) 금성 구성원변호사	'22.11.1.~'24.9.23.
	3	구OO	남	구성한 법률사무소 변호사	'22.11.1.~'25.10.31.
	4	도OO	남	법률사무소 태우 변호사	'22.11.1.~'25.10.31.
	5	박OO	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2.12.1.~'25.11.30.
	6	배OO	여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23.2.16.~'26.2.15.
	7	소OO	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23.1.1.~'25.12.31.
	8	이 O	남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	'22.11.1.~'25.10.31.

기수	구성인원	성명	성별	주요이력	위원 임기
	9	이OO	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3.2.16.~'26.2.15.
	10	조OO	여	전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23.2.16.~'26.2.15.
	11	채OO	남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	'22.11.1.~'24.7.5.
	12	최OO	남	법무법인 산지 파트너변호사	'22.11.1.~'25.10.31.
	13	박OO	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2.11.1.~'25.10.31.
	14	최OO	여	한국청소년동아리문화연구원 원장	'20.11.13.~'23.11.12.
	15	이OO	여	경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좌교수	'23.12.20.~'26.12.19.
	16	김OO	여	노무법인 신유 대표 공인노무사	'24.9.26.~'27.9.25.
	17	박OO	남	前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22.8.19.~'23.12.31.
	18	이OO	남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24.1.1.~

※ 2024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224면 재인용.

〈 최근 5년간 인권위원회 개최 및 심의·자문 등 현황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월
위원회 개최	정기회	4회	4회	2회	4회	3회
	임시회	3회	2회	0회	0회	0회
	소위원회	8회	8회	0회	12회	8회
심의·자문*		23건	12건	3건	12건	13건
개선권고*		4건	5건	2건	1건	4건

※ 정기회·임시회 안전상정 기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24년 11월 8일 별도제출자료 재인용.

〈 최근 5년간 인권위원회 개선권고 내용 〉

연도	권고시기	권고내용
2024년 10월까지	'24. 2.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 고용차별 및 인권환경개선 권고
	'24. 2.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및 입소노인 인권보호와 인권 환경개선 권고
	'24. 2.	시립병원 보건의료업무 종사자 인권보호와 인권에 기반한 환경개선 권고
	'24. 2.	서울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증진 및 근무환경개선 권고
2023년	'23. 12.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 인권보호 및 인권환경개선에 대한 권고
2022년	'22. 3.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재난 관련 분야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권고
	'22. 3.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재난상황 시설 거주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권고

연도	권고시기	권고내용
2021년	'21. 11.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대한 권고
	'21. 5.	코로나-19 재난상황 주거취약계층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
	'21. 3.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지침·편람 개정에 대한 권고
	'21. 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권고
	'21. 3.	재난상황 아동 공적돌봄 개선을 위한 권고
2020년	'20. 6.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권고
	'20. 6.	서울시 '2020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에 대한 권고
	'20. 4.	인권친화적 대학 기숙사 공동생활 가이드라인 마련 지원을 위한 권고
	'20. 4.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권고

※ 시민감사옹부즈만위원회, 2024년 11월 8일 별도제출자료 재인용.

사)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 동 사업은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¹⁾ 연 1회 이상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 개선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전년(6천2백만원) 대비 80.3% 증액된 1억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62,460	62,460	112,600	50,140	80.3
사무관리비	62,460	62,460	112,600	50,140	80.3

- 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인권교육)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서울인권아카데미 운영 = 11,560천원	○ 서울인권아카데미 운영 = 10,800천원
	- 관리자 교육 760,000원*1회 = 760천원	- 본청교육 500,000원*11회 = 5,500천원
	- 본청교육 800,000원*6회 = 4,800천원	- 찾아가는 인권교육 240,000원*5회 = 1,200천원
	- 찾아가는 인권교육 240,000원*5회 = 1,200천원	- 모니터링비 1,500,000원 = 1,500천원
	- 모니터링비 2,300,000원 = 2,300천원	- 교육 운영비 2,600,000원 = 2,600천원
	- 교육 운영비 2,500,000원 = 2,500천원	○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6,000,000원*8개월 = 48,000천원
	○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6,000,000원*8개월 = 48,000천원	○ 인권강사양성 = 48,000천원
	○ 선정위원회 운영 200,000원*7명 = 1,400천원	- 기본과정 24,000,000원 = 24,000천원
	○ 자문회의 운영 150,000원*5명*2회 = 1,500천원	- 심화과정 24,000,000원 = 24,000천원
		○ 선정위원회 운영 200,000원*7명*2회 = 2,800천원
		○ 자문회의 운영 150,000원*5명*4회 = 3,000천원
	증감사유	
○ 증액 : 50,140천원(사유 : 집합교육 수요 증대로 인적기반 조성을 위해 인권강사 양성 과정 재운영) - 인권강사 양성 : 48,000천원(기본 및 심화과정 운영 용역) - 선정위원회 운영 : 1,400천원(선정위원회 운영 증1회) - 자문회의 운영 : 1,500천원(자문회의 운영 증2회) - 관리자교육 : △760천원(별도 교육 수요 감소 및 통합운영)		

- 먼저, “인권강사 양성”은 집합교육 수요 증대로 인적기반 조성을 위해 인권강사 양성 과정 재운영을 위하여 4천 8백만원을 순증하고 있는바, 이는 인권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2~3년 주기로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2023년 시행하지 않았던 “인권강사 양성” 사업을 재운영 하기 위한 것임.

- ※ 2023년 편성 예산에서 “인권강사 양성”사업은 그동안 강사가 충분히 양성되어 강사 수급에 문제 없으며, 모집지원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권강사 양성 주기를 매년에서 2~3년으로 조정하여 “인권강사 양성” 사업 예산을 감액하였고, 2024년 편성 예산도 없었음.
- 인권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형식적인 교육으로 인권교육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는바, 집합교육 수요 확대에 따른 인권강사 양성 과정 운영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인권강사 양성” 사업을 용역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나, 인권강사 양성 과정은 단순한 인권의 지식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닌 사회의 인권적 변화를 이해하고, 소통해 낼 수 있는 역량이 지원되어야 하며, 인권교육과 인권교육 활동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과정 내내 공유받을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 인권강사 양성 후에도 지속적인 전문교육이 필요함에도, 2~3년 주기로 “인권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면 교육진행 후 단절이 일어나므로, 교육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권교육 강사 양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다음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9월까지 인권교육 이수율에서 본청 일부(시장실 등 37%)와 소방서 등의 낮은 이수율을 지적하며, 시민 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다양한 인권교육 실시로 직원들의 참여 제고와 이수율이 낮은 부서들은 원인을 파악하고, 인권교육을 독려하라고 하였는바, 인권교육 이수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4년 9월까지 서울시 본청 인권교육 이수율 현황 〉

연번	실·국명	대상(명)	이수(명)	이수율(%)	연번	실·국명	대상(명)	이수(명)	이수율(%)
1	감사위원회	136	99	73%	18	민생노동국	158	145	92%
2	건설기술정책관	88	58	66%	19	민생사법경찰국	72	65	90%

연번	실·국명	대상(명)	이수(명)	이수율(%)	연번	실·국명	대상(명)	이수(명)	이수율(%)
3	경제실	234	134	57%	20	복지실	219	124	57%
4	관광체육국	93	59	63%	21	비상기획관	60	59	98%
5	교통실	467	312	67%	22	서울특별시(시장실, 행정1·2부시장실, 정무부시장실)	57	21	37%
6	균형발전본부	150	106	71%	2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54	33	61%
7	글로벌도시정책관	77	49	64%	24	시민건강국	203	122	60%
8	기획조정실	300	295	98%	25	여성가족실	175	92	53%
9	기후환경본부	231	154	67%	26	자치경찰위원회	38	30	79%
10	대변인	49	33	67%	27	재난안전실	295	224	76%
11	도시공간본부	205	128	62%	28	재무국	236	195	83%
12	디자인정책관	66	38	58%	29	정원도시국	164	100	61%
13	디지털도시국	210	151	72%	30	주택실	308	223	72%
14	문화본부	170	98	58%	31	평생교육국	92	63	68%
15	물순환안전국	133	87	65%	32	행정국	563	389	69%
16	미래공간기획관	101	64	63%	33	홍보기획관	156	91	58%
17	미래청년기획관	49	22	45%	계		5,609	3,863	69%

※ 2024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272면 재인용.

〈 2024년 9월까지 사업소 중 인권교육 이수율 50% 미만 현황 〉

연번	실·국명	대상(명)	이수(명)	이수율(%)	연번	실·국명	대상(명)	이수(명)	이수율(%)
1	119특수구조단	180	0	0%	9	미래한강본부	545	259	48%
2	강남소방서	366	0	0%	10	서울대공원	385	173	45%
3	강동소방서	302	0	0%	11	서울종합방재센터	221	0	0%
4	강서소방서	321	0	0%	12	서초소방서	319	0	0%
5	구로소방서	309	0	0%	13	송파소방서	332	0	0%
6	금천소방서	187	0	0%	14	양천소방서	278	0	0%
7	도봉소방서	231	0	0%	15	영등포소방서	286	0	0%
8	동작소방서	236	0	0%	16	용산소방서	263	0	0%

※ 2024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273-274면 참조.

아)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 동 사업은 다양한 인권정책 발굴을 위한 인권현안 및 취약분야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것으로 전년(9천7백만원)과 같음.

〈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97,200	97,200	97,200	0	0
사무관리비	97,200	97,00	97,200	0	0

〈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인권 현안 실태조사 용역 9,000,000원*5개월*2건 = 90,000천원	○ 인권 현안 실태조사 용역 9,000,000원*5개월*2건 = 90,000천원
	○ 실태조사 선정 등 위원회 운영 = 7,200천원	○ 실태조사 선정 등 위원회 운영 = 7,2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4명*4회*2건 = 6,4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4명*4회*2건 = 6,400천원
	- 회의 운영비 100,000원*4회*2건 = 800천원	- 회의 운영비 100,000원*4회*2건 = 800천원

- 인권실태조사는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실태조사 추진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2024년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용역 예산 편성은 2건의 용역을 위하여 9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4건의 용역을 8천 1백만원으로 계약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예산 편성보다 용역 건수가 증가하였음에도 실제 계약금액은 적은바,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 발주는 아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위원회는 “인권실태조사” 용역에 대하여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4년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용역 현황 〉

(단위 : 천원)

실태조사명	선 정 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여부	수의 계약 사유	예산액
서울시 여성 노숙인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알앤알컨설팅주식회사	소액수의	수의계약	여성기업	21,200
서울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알앤알컨설팅주식회사	소액수의	수의계약	여성기업	17,150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아동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주)매트리스	소액수의	수의계약	여성기업	19,100
서울시 한부모 이주여성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주식회사코리아리서치	소액수의	수의계약	여성기업	23,520

※ 2024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212면 참조.

〈 최근 3년간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단위: 천원)

연도	예산 편성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불용률 (C/A)
	산출기초	편성액(A)			
2022년	인권현안 실태조사 : 48,000	51,600	49,339	2,261	4.4%
	실태조사 선정 등 위원회 운영 : 3,600				
2023년	인권현안 실태조사 : 144,000	154,800	132,007	22,793	14.7%
	실태조사 선정 등 위원회 운영 : 10,800				
2024년 10월말	인권현안 실태조사 : 90,000	97,200	85,970	11,230	11.6%
	실태조사 선정 등 위원회 운영 : 7,200				
2025년	인권현안 실태조사 : 90,000	97,200	-	-	-
	실태조사 선정 등 위원회 운영 : 7,200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24년 11월 8일 별도제출자료 재인용.

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 동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등록 법인)을 통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자와 가족을 보호·지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1억 1천 3백만원) 대비 20% 증액한 1억 3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13,100	113,100	136,200	23,100	20
사무관리비	1,100	1,100	1,800	700	64
민간경상사업보조	112,000	112,000	134,400	22,400	20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예산 편성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지원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1,100,000원 = 1,100천원	○ 지원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1,800,000원 = 1,800천원
	-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6명 = 900천원	-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8명 = 1,600천원
	- 회의 운영비 200,000원*1회 = 200천원	- 회의 운영비 200,000원*1회 = 200천원
증감사유		
	○ 지원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필요최소경비 부족으로 700천원 증액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사업 선정단체 사업비 지원 22,400,000원*5개 단체 = 112,000천원	○ 지원사업 선정단체 사업비 지원 26,880,000원*5개 단체 = 134,400천원
	증감사유	
	○ 최근 이상동기범죄 증가로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22,400천원 증액 편성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은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8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서울시에 소재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수행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5. 1. ~ 12.
- 지원대상 : 신체, 생명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 사업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수행 단체에 사업비 지원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상담 또는 법률구조 및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의 치료 등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운영
-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활동

-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서울시 5대 강력범죄에서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살인('22년 104건 → '23년 150건), 강도('22년 117건 → '23년 129건)는 증가하였고, 2023년에 발생한 5대 강력범죄만 86,213건에 달하고 있으나,

〈 최근 5년간 서울시 5대 범죄 발생현황(2019년~2023년) 〉

(단위: 건, %)

연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23	150	144	129	117	5,764	5,395	37,038	21,600	43,132	37,567
2022	104	98	117	112	5,816	5,344	37,579	20,205	46,783	39,338
2021	124	112	122	116	4,911	4,446	33,531	17,950	41,757	35,388
2020	141	126	138	132	5,763	5,458	38,293	19,705	48,344	41,127
2019	136	128	136	133	6,469	6,007	42,204	21,284	54,723	47,253

※ 출처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s://data.seoul.go.kr/>, 2024년 11월 14일 최종방문).

- 서울시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보조금은 2023년에는 1억 2천 5백만원으로, 195건, 138명이 지원을 받았고, 2024년에는 1억 1천 2백만원이며, 5개의 센터에서 2024년 9월까지 120건, 132명만 지원하고 있어,

-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극소수라고 지적하며,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보조금 확대나 범죄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바,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범죄피해자 지원 평균 금액 및 지원 건수 등 〉

(단위 : 천원)

구 분	보조금 예산액	지원 금액	소 계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합 계	512,000	476,205	692	580	329	290	91	70	102	87	83	74	87	59
2021	150,000	141,030	217	186	97	93	21	19	48	36	26	22	25	16
2022	125,000	124,978	160	124	75	45	17	16	22	21	24	21	22	21
2023	125,000	125,000	195	138	100	66	30	21	23	21	14	14	28	16
2024	112,000	85,197	120	132	57	86	23	14	9	9	19	17	12	6

※ 2024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217면 재인용.

〈 단체별 범죄피해자 지원현황 〉

연도	단체명	지원실적 (수혜건수 및 인원)
2021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 총 97건(93명) / 50,000천원 - 의료비 : 21건(21명) - 심리치료 : 43건(23명) - 생계비 : 31건(12명) - 추석생필품 지원 : 1건(37명) - 기타 : 1건
	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 21건(12명) / 16,039천원 - 의료비 : 8건(8명) - 심리치료비 : 8건(8명) - 생계비 : 4건(2명) - 이전비 : 1건(1명)
	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 48건(30명) / 24,111천원 - 의료비 : 26건(21명) - 생계비 : 9건(8명) - 이전비 : 1건(1명) - 인쇄비 : 2건 - 홍보비 : 4건 - 회의비 : 6건(6명)
	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 26건(18명) / 24,990천원 - 의료비 : 11건(11명) - 생계비 : 12건(9명) - 간병비 : 1건(1명) - 장례비 : 1건(1명) - 인쇄비 : 1건
	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 25건(11명) / 25,000천원 - 의료비 : 15건(10명) - 생계비 : 10건(6명)
2022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 총 75건(45명) / 40,000천원 - 의료비 : 22건(16명) - 심리치료비 : 24건(18명)

연도	단체명	지원실적 (수혜건수 및 인원)
		- 생계비 : 27건(10명) - 주거이전비 : 1건(1명) - 생필품 : 13건(13명)
	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 17건(16명) / 10,000천원 - 주거이전비 : 1건(1명) - 심리치료 : 10건(10명) - 생계비 : 6건(5명)
	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 22건(21명) / 25,000천원 - 의료비 : 11건(11명) - 심리치료비 : 1건(1명) - 생계비 : 7건(6명) - 주거이전비 : 2건(2명) - 장례비 : 1건(1명)
	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 24건(21명) / 24,978천원 - 의료비 : 11건(11명) - 생계비 : 11건(9명) - 홍보비 : 1건 - 심리치료비 : 1건(1명)
	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 22건(21명) / 25,000천원 - 의료비 : 9건(9명) - 생계비 : 13건(12명)
2023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 총 100건(66명) / 40,000천원 - 의료비 : 21건(18명) - 심리치료비 : 52건(32명) - 생계비 : 20건(10명) - 주거이전비 : 6건(6명) - 생필품 : 1건
	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 30건(21명) / 25,000천원 - 심리치료비 : 21건(16명) - 생계비 : 9건(5명)
	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 23건(21명) / 25,000천원 - 의료비 : 9건(9명) - 심리치료비 : 2건(2명) - 생계비 : 9건(7명) - 주거이전비 : 2건(2명) - 장례비 : 1건(1명)
	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 14건(14명) / 10,000천원 - 의료비 : 7건(7명) - 심리치료비 : 1건(1명) - 생계비 : 6건(6명)
	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 28건(16명) / 25,000천원 - 의료비 : 9건(7명) - 생계비 : 19건(9명)
2024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 총 57건(86명) / 34,148천원 - 의료비 : 9건(9명) - 심리치료비 : 25건(25명) - 생계비 : 21건(21명) - 주거이전비 : 1건(1명) - 생필품 : 1건(30명)
	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 23건(14명) / 13,180천원 - 심리치료비 : 6건(6명) - 생계비 : 17건(8명)
	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 9건(9명) / 14,100천원 - 의료비 : 1건(1명) - 생계비 : 7건(7명) - 주거이전비 : 1건(1명)
	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 19건(17명) / 13,308천원 - 의료비 : 14건(13명) - 생계비 : 2건(1명) - 주거이전비 : 3건(3명)
	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 12건(6명) / 10,461천원 - 의료비 : 4건(4명) - 생계비 : 8건(4명)

※ 2024년 시민감사옹무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 213-214면 재인용.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